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19가단532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 담당변호사 고혜련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정현재, 김새롬, 유상호, 양호중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395,25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분할변제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2.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115,739,3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39,3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3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5. 17. 금형제조업, 금형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D은 그 설립 당시부터 F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G는 공장장 겸 감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C은 F의 아들로 2018. 6.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경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비채무금액을

112,395,250원으로 확정하고, D이 원고에게 2018. 11. 29. 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년 12월부터는 매월 15일에 10,000,000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18.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시 I',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업태), 금형(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I에서 'H'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D은 2018. 11. 14.경 원고 등의 거래처들에게 '회사의 주소지가 화성시 J에서 화성시 I로 이전되었음을 공지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D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2018. 11. 21. '화성시 I'로, 2018. 12. 27. '화성시 I, K동'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D은 2020. 7. 30.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운영하는 H와 D은 모두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점, D의 대표자 F의 아들인 피고 C과 D의 공장장이었던 피고 B이 공동으로 H를 설립한 점, H는 D이 사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거래처 등도 대부분 동일한 점, D이 2018. 11.경 이전하였다는 본점 소재지와 H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은 D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D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가지는 가공비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인 115,739,3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 위 주위적 청구원인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H와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D은 원고에 대한 가공비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H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H를 운영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도 D에 대하여 갖는 가공비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또한, D은 2018. 11.경 원고 등의 거래처들에게 위 1.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주소지 이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는 D이 피고들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D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D의 원고에 대한 가공비채무를 변제할 책임도 부담한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D에 대하여 갖는 가공비채무 112,39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일체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D과 피고들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양도된 D의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원고의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개인사업체 운영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운영하는 H는 D과 그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D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F를 대표자로 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1.경 본점 소재지를 '화성시 I'로 이전하였는데, 피고들은 D이 위와 같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이후인 2018. 12.경 D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H를 설립한 이후 D의 유형자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D의 주요 거래처 중 상당수와 거래를 하며 D이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운영하는 H와 D은 그 영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② H를 설립한 피고들 중 피고 B은 D의 공장장 겸 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D의 대표자인 피고

F의 아들로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D에 근무하였던 직원 중 P, 피고들, Q, R, S, T, U, V, W, X, Y이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H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H가 설립된 2018. 12.경 D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은 F, 피고들, T, U, V, Z, W, Y 9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가입자명부 표 최종상실일 기준), 위 9인 중 대표자였던 F와 H가 설립된 무렵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Z를 제외한 전원이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주요 인적 조직 구성원이 H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③ 피고들이 운영하는 H는 D이 원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가공비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점인 2018. 12.경 설립되었다(D이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서상의 분할변제금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D은 H와 동일하게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한다면서도 H가 설립된 이후에는 D의 주요 거래처 등과 영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약정된 변제계획상의 가공비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0. 7. 30.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④ H가 D이 사용하던 금형기계 등을 이전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금형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D이 사용하던 금형기계를 29,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4호증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위 각 기계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이 2019. 1. 1. D으로부터 금형기계들을 합계 약 28,93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D과 피고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9. 1.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들 명의의 H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기계대금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은 합계 33,556,690원(2019. 1. 30. 2,915,000원, 2019. 1. 31. 13,000,000원, 2019. 2. 1. 3,000,000원, 2019. 2. 11. 2,220,000원, 2019. 2. 18. 2,000,00원, 2019. 2. 25. 2,000,000원, 2019. 3. 4. 500,500원, 2019. 3. 6. 2,000,500원, 2019. 3. 8. 319,690원, 2019. 3. 11. 5,601,000원)이 되어 위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고, 피고들은 2019. 3. 11.경 이후에도 2019. 11. 19.경까지 D의 예금계좌로 약

8,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들이 D에게 어떠한 법률상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D 사이에 위 기계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고 피고들이 D에 지급한 금원이 기계대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⑤ 피고들은, 「D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당시 화성시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임차하였는데, D이 금형제조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1개동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새로이 O과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이 2018. 12.경부터 O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10. 3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피고 B이 O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3. 25.자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K동 10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4. 22.자 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C이 위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임차하였다는 2018. 10. 31. 이후인 2018. 12. 4. D이 O에게 5,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이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2018. 10. 30.자로 임차한 것이라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이 2019. 4. 22. 무렵 및 그 이후 피고들에게 위 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월 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전대차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O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데, ㉠ 만일 D이 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피고들이 O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D이 임대한 이

사건 공장 건물 2개동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㉔ 만일 피고들이 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D이 최초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2개동을 임차하였다는 피고들 주장과 모순되고 D이 2018. 12.경 1개월분의 차임을 피고 O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들과 D 사이의 재산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용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㉕ 다음과 같은 피고들, H, F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들의 소명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H를 설립한 무렵인 2018. 12.경 전후로 D이 폐업한 2020. 7.경에 이르기까지 D, D의 대표자 F, H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각 재산이 서로 혼용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㉖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H 예금계좌로 2018. 12. 28. 5,000,000원, 2019. 1. 3. 2,000,000원, 2019. 1. 4. 10,000,000원, 2019. 1. 10. 54,917,397원, 2019. 1. 10. 506,630원, 2019. 1. 17. 450,000원, 2019. 4. 24. 4,000,000원이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D이 H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들은, 2019. 1. 9. D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D에게 금형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D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7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이고, 피고들이 설립한 이후에도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D이 피고들에게 2019. 1.경 금형제작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들은 D에게 공급하였다는 금형사진 및 전극사진을 을 제7, 8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에 있는 금형들이 D에 공급되었고 그 가치가 55,000,000원에 이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금형을 공급하고 5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㉗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H 예금계좌에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1.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합계 33,556,690원이 이체된 외에도(위 ㉔항 참조), 피고들 명의의 H 예금계좌에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3. 2. 200,000원, 2019. 3. 20. 15,000,000원, 2019. 3. 22. 54,000원, 2019. 3. 27. 3,000,000원, 2019. 4. 10. 8,000,000원, 2019. 4. 11. 2,500,000원, 2019. 4. 17. 1,200,000원, 2019. 5. 3. 2,000,000원, 2019. 5. 10. 10,000,000원, 2019. 5. 13. 2,500,000원, 2019. 5. 13.

2,500,000원, 2019. 5. 15. 3,630,000원, 2019. 5. 15. 5,500,000원, 2019. 6. 3.
1,000,000원, 2019. 6. 5. 2,200,000원, 2019. 6. 10. 6,600,000원, 2019. 6. 12.
1,100,000원, 2019. 6. 24. 1,760,000원, 2019. 7. 5. 2,750,000원, 2019. 8. 2. 3,000,000원,
2019. 10. 31. 4,000,000원, 2019. 10. 31. 5,500,000원, 2019. 11. 1. 6,000,000원, 2019.
11. 19. 300,000원, 2020. 7. 6. 59,280원, 2020. 7. 7. 24,640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고들은 D에게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㉔ 피고들 명의의 H 예금계좌에서 ‘2019. 4.경 이후 F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의 월 차임, 관리비, 도시가스비가 지급된 내역’, ‘F가 지급하여야 할 상환금 채무,
과태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내역’, ‘F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A에 대한 금원이 지급된 내역’,
‘D의 직원으로 2019. 1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W에게 거액이 지급된 내역(2019. 7. 12.
10,000,000원, 2019. 8. 5. 1,210,700원, 2019. 8. 5. 7,085,760원, 2019. 8. 5.
121,020원)’이 각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을 운영하던 F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H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H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㉕ 피고들은, 「사출사업과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D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금형제조업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피고 B이 D과 독립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해보기로
결정하였고, 자금이 없던 피고 C이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었던 피고 C과 함께 H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피고들은 H를 설립한 이후에도 2019. 1.
31.경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H는 D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등 거의 모든 자산을
양수하여 설립된 점, D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대로 D에게 남겨둔 채 D의 사업 노하우, 영업자산,
경영상의 정보 등의 권리만 가져와 H가 설립된 점, H가 설립 과정에서 D에게 위 권리에 대한 로열티,
시설대금 등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들이 D과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H를 설립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D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 결국 피고들이 H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D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와 H를 운영하는 피고들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D은 2018. 11. 16.경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그 동안의 가공비채무를 112,395,250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위 변제계획서에 따라 원고에게 112,395,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H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395,25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분할변제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12,395,250원에 대하여 2018. 11. 16.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그 분할이나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와 D 사이에 위 변제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다거나 민법 제388조가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분할변제일에 각 분할변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

[표]

순번	분할변제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1	5,000,000원	2018. 11. 30.
2	10,000,000원	2018. 12. 16.
3	10,000,000원	2019. 1. 16.
4	10,000,000원	2019. 2. 16.
5	10,000,000원	2019. 3. 16.
6	10,000,000원	2019. 4. 16.
7	10,000,000원	2019. 5. 16.
8	10,000,000원	2019. 6. 16.
9	10,000,000원	2019. 7. 16.
10	10,000,000원	2019. 8. 16.
11	10,000,000원	2019. 9. 16.
12	7,395,250원	2019. 10. 16.
합계	112,395,250원	

